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3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6. 12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생활보장과장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의료급여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지원에 대한 세출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- 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(안 제4조제4호)
- 특별회계 세출기준 명확화(안 제5조제1호)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지원에 대한 세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의 2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
 - 안 제4조의 제4호에서는 의료급여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며
 -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특별회계 세출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로 정해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2023. 3. 29~3. 31.까지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「의료급여법」 제21조의 ‘대불금’을 ‘대지급금’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며,
- 특별회계 세출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상위법인 「의료급여법」 제21조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의료급여법

제3조(수급권자)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5. 3. 27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2.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3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
4.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6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

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)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7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8.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9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10.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대지급금의 상환)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(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. 이하 "상환의무자"라 한다)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.

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

2.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 공문



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

마포구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2023년 마포구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

1. 디지털재정과-5281(2023. 4. 3.)호 관련입니다.
2.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가. 심의기간 : 2023. 3. 29.(수) ~ 3. 31.(금)

나. 심의방법 : 서면심의

다. 심의결과 : 아래 특별회계,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2028년 12월 31일까지)은 '적정'한 것으로 심의의결함

연번	특별회계(기금)명	부서
1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생활보장과
2	마포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	경제진흥과
3	건축안전 특별회계	건축지원과
4	주차장 특별회계	주차관리과
5	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	생활보장과
6	공유재산 관리기금	재무과

끝.

마포구청장

수신자 생활보장과장, 경제진흥과장, 재무과장, 건축지원과장, 주차관리과장

주무관

예산팀장

디지털재정과장

협조자

시행 디지털재정과-5477 (2023.04.06.) 접수 생활보장과-9176 (2023.04.06.)

우 0393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) /www.mapo.go.kr

전화 02) 3153-8513 /전송 02) 3153-8549 / hsh0628@mapo.go.kr / 공개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